

트러스트 제갈공명 소득공제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 코드: AP915)

투자 위험 등급
4 등급 [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트러스트 제갈공명 소득공제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트러스트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 등급(보통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귀하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p>
----------	---

집합투자기구 특징	펀드 자산의 80%이하 채권에 투자하고, 50%미만을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혼합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모자형		
집합투자업자	트러스트자산운용(주) (02-6308-0500)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계속 모집할 수 있음	모집(매출) 총액	모집규모를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효력발생일	2017. 3. 30.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류(Class)	C	Ce	S-T
가입자격	가입제한 없음	인터넷을 통해 가입	펀드슈퍼마켓을 통해 가입
판매수수료	-	-	-
환매수수료	-	-	-
보수 (연, %)	판매	0.520	0.260
	운용 등	0.290	0.290
	기타	0.002	0.002
	총보수·비용	0.812	0.552
합성 총보수·비용	0.818	0.558	0.528

※ 주식사항	<p>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의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p> <p>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p> <p>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p> <p>4) 판매 및 운용 보수 등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마다 지급되며 기타 보수는 사유 발생시 지급됩니다.</p>
--------	---

매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시 30 분 이전: 제 2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 15 시 30 분 경과후 : 제 3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환매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시 30 분 이전: 제 2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 4 영업일에 지급 · 15 시 30 분 경과후 : 제 3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 4 영업일에 지급
-------	--	-------	--

기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방법 :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 · 공시장소 : 집합투자업자·금융투자협회·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판매회사 영업점
-----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서민과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비교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 (KIS국고채1~2년×55%) + (KOSPI지수×40%) + (Call금리×5%)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 채권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트러스트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트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듀레이션	1.5년	4.5년

(1) 듀레이션 전략

금리전망에 근거하여 단계적, 점증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듀레이션 조정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합니다.

* 듀레이션(가중평균만기) :

듀레이션은 단순히 최종 원금상환 시점을 의미하는 만기와는 달리 모든 현금수입 발생시기와 규모 등 현금수입의 시간적 흐름을 고려하고 있는 개념으로 만기, 채권수익률 및 표면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채권의 경우 듀레이션은 약 2.7년입니다.) 채권의 금리변동 위험측정 수단으로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가 상승(하락)할 때 채권가격의 하락(상승)폭이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2) 일드 커브(Yield Curve) 전략

일드 커브(Yield Curve) 전략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만기구간에 투자를 하여 장단기 스프레드의 축소(확대)를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국 통화정책과 이에 대한 시장의 기대, 수급 요인에 기초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3) 상대가치 전략

상대가치 전략은 시장 기대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 발생하는 채권 금리의 왜곡 현상을 활용하는 투자전략으로 이러한 시장의 불균형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채권에 투자하여 추가수익을 달성합니다.

① 수익률곡선 전략

채권은 액면가와 이자가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만기가 다가올수록 채권가격은 오릅니다. 따라서 채권의 만기가 줄어들면서 마치 돌이 굴러 떨어지듯이 급격하게 금리가 하락하여 자본이익이 발생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를 채권의 롤링(Rolling) 효과라고 하며, 수익률 곡선상 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구간의 채권을 매수하여 롤링효과를 누리는 채권투자전략입니다.

② 종목선택 전략

두 채권간의 금리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스프레드가 평균치를 상당폭 벗어날 때 평균치에

다시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채권을 매수하고 가격이 높은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 **주식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트러스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가치주 또는 성장주 일방에 편향되지 않고, 시장 흐름에 유연한 자세로 운용하고, In-house research(회사 내의 리서치 조직)를 바탕으로 거시경제 분석과 Bottom-up 분석(개별기업 분석)을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업을 선택, 분석하여 내재가치 이하에서 투자합니다.**

또한 고성장 산업군 내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며 기업 펀더멘탈과 무관한 주가 변동은 초과수익의 기회로 포착하여 투자합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80%이하를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으로서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가격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4. 운용전문인력

(2017. 2. 28. 현재, 단위:개,억원)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안홍익	1976년	주식 운용 책임 운용역 (이사)	13	4,349	학력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경력 03.01~05.06 SK증권 리서치 애널리스트 05.06~07.05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섹터애널리스트 07.05~09.04 BNP PARIBAS 증권 애널리스트 09.05~현재 트러스트자산운용 주식운용2본부 1팀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주식 운용 부책임 운용역 (부장)			7
김정훈	1988년	주식 운용 부책임 운용역 (대리)	5	2,487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경력 13.10~현재 트러스트자산운용 주식운용2본부 1팀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문성호	1977년	채권 운용 책임 운용역 (부장)	22	8,763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수료 경력 03.12 ~ 04.09 동부증권 06.12 ~ 08.06 유진자산운용 채권운용팀 08.06 ~ 10.05 LS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10.06 ~ 12.03 산은자산운용 채권운용1팀

12.03 ~ 14.03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채권운용1팀
 14.04 ~ 현재 트러스트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팀제 운용으로 채권운용본부와 주식운용 2 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 상기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규모 : 해당사항 없음

5. 투자실적 추이

(단위 : %)

종류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6.03.17 ~17.03.16	15.03.17 ~16.03.16	14.03.17 ~15.03.16		
C	5.40	4.94	4.74		
비교지수	4.49	1.23	3.74		

주 1) 비교지수 : KOSPI×40%+KIS 국고채 1~2년×55%+CALL×5%

주 2) C 클래스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습니다.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3)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4)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표준편차	투자위험등급
5.90%	4 등급 (보통 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80%이하를 투자하고 주식에 50%미만을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채권혼합형)으로서 3년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 5.90%로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

라서 채권형 증권투자신탁보다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매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결산일 기준 이전 3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을 재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구간이 변경되는 경우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위험등급분류는 트러스트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3.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채권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전략

(트러스트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트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 시장위험 : 시장상황에 따른 듀레이션 조정으로 시장 위험을 최소화
- 신용위험 : 국공채, 통안채, 신용등급 AAA 이상의 은행채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신용위험 최소화
- 컴플라이언스 : 사전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가동하여 운용지시 전 제반 법규 및 지침의 위반 여부를 사전체크

□ 주식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전략 (트러스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

- 관리대상 및 투자유의 종목 등 펀더멘탈이 훼손된 종목은 사전적으로 매매를 제한
- 비교지수를 추적하는 가운데 적정 추적오차 범위를 유지
- 특정 섹터 및 종목의 지나친 쏠림현상을 지양하고 섹터간 밸런스를 유지

III. 집합투자기구 기타 정보

1. 과세

수익자는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과세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
가입자격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매년 6.30. 이전 가입 시에는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2015.12.31.까지 [가입신청 이후 익일 매수하므로 2015. 12. 30. 기준시간 이전까지 신규 신청(자금 납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저축 계약기간	10년 이상 * 단 5년 이내 해지시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한도로 추징합니다.

가입한도	연 600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단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 받는 소득세액의 20%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 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면세액 추징	가입 후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합니다(지방소득세 포함시 추징세액 증가).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1.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2. 해지 전 6개월 이전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저축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저축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truston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trustonasset.com)